

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

의안
번호 **290**

제출년월일 : 2000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중평소방서진천파출소 신축에 따른 진천군 소유재산과 충청북도 공유(잡종)재산의 상호교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재산의 교환

○ 교환취득

소 재 지	지 목	지 적 (m ²)	교환면적 (m ²)	개별공시지가(원)	재산평정가격(천원)
계	2필지	4,618	4,618		33,885
진천 진천 장관 산8-1	임야	4,066	4,066	7,560	30,739
" 6-3	전	552	552	5,700	3,146

○ 교환처분

소 재 지	지 목	지 적 (m ²)	교환면적 (m ²)	개별공시지가(원)	재산평정가격(천원)
계	2필지	5,680	5,680		34,080
진천 진천 장관 269	답	3,770	3,770	6,000	22,620
" 271	답	1,910	1,910	6,000	11,460

※ 필지별 공시지가 : '99. 1. 1 기준

3. 예산사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재산의 취득	재산의 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고
공유재산의 상호교환			33,885	34,080	트지

※ 재산의 교환·처분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정가격이며
교환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

4.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: 「별첨」

5. 관계법령 : 「별첨」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

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
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	토지	3	509,090	31,564,372	2	4,618	33,885	5	513,708	31,598,257
	건물	1	3,316	2,699,224				1	3,316	2,699,224
	기타									
매	토지	3	509,090	31,564,372				3	509,090	31,564,372
	건물	1	3,316	2,699,224				1	3,316	2,699,224
	기타									
득	토지				2	4,618	33,885	2	4,618	33,885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기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취	토지				2	5,680	34,080	2	5,680	34,080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매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교	토지				2	5,680	34,080	2	5,680	34,080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분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
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(7-3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	교환 수량	추정 가액	교환 시기	교환사유	교환 대상자
	구분	지목	소재지	지적					
2건	처분			5,680	5,680	34,080			
2건	취득			4,618	4,618	33,885			
토	처분	답 (2필)	진천군	5,680	5,680	34,080	2000년 하반기	증평소방서 진천 파출소 부지확보	진천군수
	취득	임야,전 (2필)	진천군	4,618	4,618	33,885	2000년 하반기	증평소방서 진천 파출소 부지확보	진천군수
계	건	처분							
	물	취득							
기	처분								
	타	취득							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